

더 리치먼드 미아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6264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5.18.)로부터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4.27.(월)	2026.06.18.(목)	2026.06.23.(화)	2026.06.26.(금)	2026.07.0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8.(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5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6.23.(화)	2026.06.26.(금)	2026.07.01.(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리치먼드 미아 주택전시관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2항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5.18.(월))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4층 1개동 총 118세대(임대주택 19세대 포함) 중 잔여 98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호수 내역
2026910155	01	049.7500A	49A	84	401, 404, 406, 501, 502, 503, 506, 602, 606, 701, 702, 703, 704, 706, 801, 802, 803, 804, 806, 902, 903, 904, 906, 1001, 1002, 1003, 1004, 1006, 1101, 1102, 1103, 1104, 1106, 1201, 1203, 1204, 1206, 1301, 1302, 1303, 1304, 1306, 1402, 1403, 1404, 1406, 1501, 1502, 1503, 1504, 1506, 1601, 1602, 1603, 1604, 1606, 1701, 1702, 1704, 1706, 1801, 1802, 1803, 1804, 1806, 1901, 1902, 1904, 1906, 2001, 2002, 2003, 2101, 2102, 2103, 2104, 2106, 2204, 2301, 2302, 2303, 2402, 2403, 2404
	02	059.8400A	59A	14	405, 505, 705, 805, 905, 1005, 1205, 1305, 1405, 1505, 1605, 1705, 1805, 1905
	합 계			98	-

■ 공급금액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9.30.	2027.02.28.	2027.07.31.	2028.01.31.	2028.04.30.	2028.07.31.		
49A	1호	4층	1	386,584,000	377,416,000	764,000,000	10,000,000	6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4, 6호	4층	2	384,054,000	374,946,00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 2, 3호	5~9층	12	390,632,000	381,368,000	772,000,000	10,000,000	6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31,600,000
	4, 6호	5~9층	8	388,102,000	378,898,00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1, 2, 3호	10~14층	13	394,680,000	385,320,000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4, 6호	10~14층	10	392,150,000	382,850,000	775,000,000	10,000,000	6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1, 2, 3호	15~19층	13	400,246,000	390,754,000	791,000,000	10,000,000	6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4, 6호	15~19층	10	397,716,000	388,284,000	786,000,000	10,000,000	6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235,800,000
	1, 2, 3호	20~24층	11	405,812,000	396,188,000	802,000,000	10,000,000	7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40,600,000
4, 6호	20~24층	4	403,282,000	393,718,000	797,000,000	10,000,000	6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59A	5호	4층	1	464,508,000	453,492,000	918,000,000	10,000,000	8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91,800,000	275,400,000
		5~9층	4	470,074,000	458,926,000	929,000,000	10,000,000	82,900,000	92,900,000	92,900,000	92,900,000	92,900,000	92,900,000	92,900,000	92,900,000	278,700,000
		10~14층	4	476,146,000	464,854,000	941,000,000	10,000,000	8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94,100,000	282,300,000
		15~19층	5	482,218,000	470,782,000	953,000,000	10,000,000	8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95,300,000	285,90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01-2092-1979-0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에 제출(주택전시관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호 계약자 → '401홍길동' / 405호 계약자 → '405홍길동'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49A	30,580,000	3,058,000	27,522,000
59A	49,720,000	4,972,000	44,748,000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01-2092-1980-0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시 주택전시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주택전시관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호 계약자 → '401홍길동' / 405호 계약자 → '405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 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체결일,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① 기본옵션 품목(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설치대수	설치위치 / 구성 및 모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49A	3	세대 거실 : AJ052BN1PBC1 59타입 안방 : AJ020BN1PBC1 49타입 안방, 세대 침실 : AJ016BN1PBC2 삼성전자	4,213,000	421,300	3,791,700
59A	4		5,610,000	561,000	5,049,000

※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옵션행사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장소는 발코니 장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기준 콘센트, 안방에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안방 벽걸이형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선택시에만 월패드에 연동이 됩니다.(입주자 별도 구입 에어컨등 개별 설치품은 연동이 불가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월패드 연동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기본 옵션 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적용품목		구성 및 모델(세부사항)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선택 품목 (유상 옵션)	불박이장		안방 불박이장(일반형 스탠다드형)		-	1,331,000	133,100	1,197,900
	일체형 변기+비데	49A	CSK-2507YJ(1대 설치)		호준하우징	605,000	60,500	544,500
		59A	CSK-2507YJ(2대 설치)			1,210,000	121,000	1,089,000
	인덕션 쿡탑	전타입	PEC-BI310		파세코	748,000	74,800	673,200
	식기 세척기	전타입	DW80F71Y1SEW		삼성전자	1,100,000	110,000	990,000
	주방 상판+벽	전타입	세라믹			517,000	51,700	465,300
	중문	전타입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알루인터	1,089,000	108,900	980,100
	광폭 강마루	49A	거실, 주방, 안방, 침실		-	913,000	91,300	821,700
		59A			-	1,122,000	112,200	1,009,800
	오븐	전타입	NQ36A6555CK		삼성전자	385,000	38,500	346,500
	독립형 세면기	49A	CSK2814ML(1대 설치)		호준하우징	154,000	15,400	138,600
		59A	CSK2814ML(2대 설치)			308,000	30,800	277,200
	주방 수전	전타입	CSK710TN(니켈브러쉬)			165,000	16,500	148,500
	하드웨어	전타입	프리미엄 수납		-	1,320,000	132,000	1,188,000
복합환풍기	49A	HMF-G700(1대 설치)		하츠	583,000	58,300	524,700	
	59A	HMF-G700(2대 설치)			1,166,000	116,600	1,049,400	

※ 기본 옵션 일괄(시스템에어컨 포함) 선택 시 49A : 7,480,000원 / 59A : 9,240,000원

③ 추가 선택 옵션 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적용품목		구성 및 모델(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비스포크 냉장고	RM70F64Q1XJ		삼성전자	3,080,000	308,000	2,772,000
거실	아트월+간접조명	1890 x 1200		호준하우징	2,420,000	242,000	2,178,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01-2092-1980-04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101동 506호 홍길동인 경우 '1010506홍길동')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시행위탁자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스프링클러, 환기구,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26.(금) ~ 2026.07.05.(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26.(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구분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6.07.01.(수), 10:00 ~ 17: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번지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8.(목))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서류제출 및 주택공급계약용 / 제출처 : 더 리치먼드 미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설정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서류제출 및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전시관 양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8.(목))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등(계좌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캡처 등)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더 리치먼드 미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 공급계약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 1/2씩 인지세 부담)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증서(100% 납입) 확인 후 1/2의 차액을 사업주체가 환불할 예정
	○		통장사본	본인	• 수입인지 세액 환불용(계약자 명의 환불통장 사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 사유서 및 증빙서류 포함)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이 일치해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주택전시관 양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②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는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채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을 부담하고, 우리자산신탁(주)는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신탁재산의 목록

2025.05.23.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과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후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에 의한 신탁재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13 대 2007평방미터]

- ③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 "을"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④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 및/또는 시공사 태원건설산업(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⑥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⑦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⑧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과 매수인 간에 또는 시공사 태원건설사업(주)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⑨ 시행위탁자 (주)베스트도시개발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지를 하는 행위는 우리자산신탁(주)를 대리하여 (주)베스트도시개발이 행사할 수 있다.)
 - 가.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 나.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 다.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등의 채무를 감면하는 행위
 - 라.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 마.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 바. 기타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우리자산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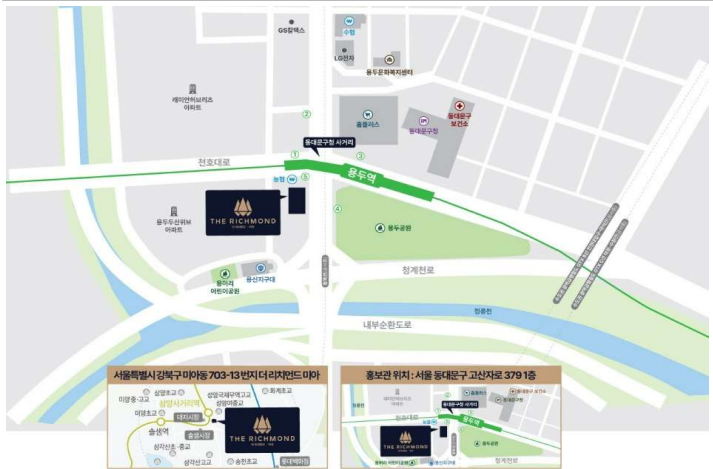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더리치먼드 미아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베스트도시개발	태원건설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2557655	164211-00047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성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503호(여의도동, 하남빌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4-7 (지족동, 네오라이프빌딩 201호)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위치

주택전시관 및 현장(약도)	주택전시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번지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분양문의	1551-6264				
	주요일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2026.04.27.(월)	2026.06.18.(목)	2026.06.23.(화)	2026.06.26.(금)	2026.07.01.(수)
홈페이지	https://www.더리치먼드미아.com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4.27.)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